보수규정시행세칙

제정 1993.06.10	개정 2005.03.14	개정 2016.10.27	개정 2021.12.24
개정 1994.07.16	개정 2005.12.21	개정 2017.07.31	개정 2022.05.13
개정 1994.09.15	개정 2006.12.26	개정 2018.12.28	개정 2022.08.30
개정 1996.01.31	개정 2009.12.30	개정 2019.06.10	개정 2022.12.29
개정 1996.07.18	개정 2011.01.21	개정 2019.12.31	개정 2023.04.27
개정 1997.11.15	개정 2011.12.28	개정 2020.08.03	개정 2023.12.28
개정 1999.03.12	개정 2013.12.31	개정 2020.11.04	
개정 1999.11.02	개정 2014.07.25	개정 2020.12.28	
개정 2003.05.09	개정 2014.08.18	개정 2021.06.30	
개정 2003.12.14	개정 2014.12.30	개정 2021.08.19	

[인사노무처 급여복지부 042-600-816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 방법

제2조(비상시의 지급) 규정 제7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퇴직
-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 3.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사망
- 4. 재해 기타 법령으로 정한 경우
-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신분 변경 시 보수계산) 규정 제8조에 의한 신분 변경 시의 월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12>

- 1. 월 보수는 매월 1일 신분 기준으로 지급하되「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한 채용, 승진, 승급, 상벌, 복직 등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개 정 2003.05.09>
- 2. (삭 제) <개정 2003.5.9., 2005.12.21., 2011.12.28., 2018.12.28., 삭제 2023.4.27>
- 3. 보수계산에 있어 모든 인사 사항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6.12.26>
- 4. 퇴직한 자가 최종월분 보수 전액(감액된 보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받고, 그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달분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임용된 신분에 의한 보수가 퇴직 당시의 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전근자의 월보수는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다만, 발령일이 1일자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3.5.9, 2005.12.21>

제4조(휴직자의 보수) 규정 제9조에 의한 휴직자의 월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상휴직자는 「보상 및 배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비로 지급한다.
- 2. 질병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 분부터 1년간에 한하여 휴직 직전 자격에 의한 기본급의 7할만 지급하고 그 다음 1년은 기본급의 5할만을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2., 2003.5.9, 2021.12.24>

제5조(결근자의 보수) 규정 제9조에 의한 결근자의 월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 제) <2014.7.25>
- 2. (삭 제) <개정 1997.11.15.. 1999.3.12. 삭제 2014.7.25>
- 3. 결근 직원에 대하여는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1999.3.12, 2014.7.25>
- **제6조(무보직자의 보수)** 규정 제12조에 의한 무보직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3.12, 2011.12.28., 2013.12.31, 2018.12.28>
 - 1. 「인사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 기본급(월 기본연봉)의 20%를 감액한다.
 - 2. 「인사규정」제15조 제1항 제4호(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5호(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6호, 제7호, 제8호의 경우 : 기본급(월 기본연봉)의 50%를 감액한다. 다만, 무보직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무보직인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월 기본연봉)의 70%를 감액한다. <개정 2022.12.29>
- 제7조(징계처분자의 보수) 규정 제12조에 의한 징계처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하며 동 기간 내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중징계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1999.3.12. 2018.12.28> 1. (삭 제) <개정 2003.5.9>
 - 2.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1회에 기본급(월 기본연봉)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단, 감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5.9, 2018.12.28>
 - 3. 정직 및 강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처분 전 발생한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2021.8.19, 2021.12.24, 2022.8.30, 2022.12.29>
 - 4. 「상벌규정」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기본급(월 기본연봉)의 30%, 강등 처분을 받은 자는 기본급(월 기본연봉)의 50%를 해당기간 동안 감액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28, 2021.12.24, 2022.12.29>
- 제7조의 2(부서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보수) 규정 제12조의 부서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라 함은 부서장(처·실장 및 지사장) 직무수행자 중「상벌규정」제1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부서장 보직을 받지 못한 1~2급 직원을 말하며,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월 기본연봉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1.21. 2018.12.28, 2020.8.3>
 - 1. 1급 : 부서장 보직 부여 시까지
 - 2. 2급 : 3개월
- 제8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 ① 정직 처분, 무보직 처분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무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파견자의 보수) 규정 제13조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파견지에서 계산 지급하되 보수는 파견지 업무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8.30>
- 2. 파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파견 전 소속에서 계산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 중의 연장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파견지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8.30>
- 제10조(수습기간 중의 보수) 수습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 제15조 별표2에 의한 직급별 초임호봉을 기준으로 일반성과급을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1999.3.12., 2003.5.9., 2020.11.4>
- 제10조의 2(겸직자의 보수) 「인사규정」제12조에 의해 1개월 이상 겸직 발령이 난 경우 겸직 직급의 동일 호봉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하되 해당 호봉이 없을 경우 겸직 직급상의 초임호봉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한다. <개정 1999.3.12, 2013.12.31>
- 제10조의 3(보직 부여 등의 보수) ①「인사규정」제13조 및「인사규정시행세칙」제11조의 2에 의해 부(팀)장 및 파트장 이상으로 1개월 이상 보직 부여(직무대리 포함) 발령이 난 경우 보직 부여 해당 직급에 대상자의 기존 호봉을 적용한 기본급과 대상자 기존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하며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보직 부여 직급 초임호봉의 기본급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하고, 직무급은 보직 부여(직무대리) 직무 해당액으로 조정·지급한다. 다만, 각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및 직제상 4급 이하 직위에 보직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9.3.12, 2003.5.9, 2005.12.21, 2011.12.28, 2013.12.31, 2021.8.19, 2022.8.30>
 - ② 연봉제 직급으로 직무대리 발령이 난 경우「연봉제규정」의 승진 가급액을 기본급에 가산하고, 해당 직무의 직무연봉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지급한다. 다만,「연봉제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8>
 - ③ 제1항, 제2항의 지급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8.19>
 - 1. 1순위 : 해당 보직 장기 근무자 <신설 2021.8.19.>
 - 2. 2순위 : 보직 부여와 직무대리 중 보직 부여 발령자 <신설 2021.8.19>
 - 3. 3순위 : 하위 직급 <신설 2021.8.19>
 - 4. 4순위 : 입사 이후 단기 근무자 <신설 2021.8.19>
- 제11조(교육, 휴일, 휴가 중의 보수)「교육훈련규정」에 의한 교육이나「취업규칙」에 의한 휴가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보수에 영향을 미지치 아니한다.

제 3 장 직무급 및 직무가급

- 제12조(직무급) 규정 제16조 '별표4'에 의한 직무급 세부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2.8.30>
 - 1. 직무평가 결과 직무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등급의 B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8.30>
 - 2. 겸직자의 경우 원직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3급 부·팀장은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0>

- 3. 무보직 또는 정직처분자는 해당 기간동안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8.30.>
- 4. 직무등급별 직무급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하며 월중 직무 변동시 1일자를 제외하고는 익월에 반영한다. <신설 2022.8.30>

제13조(직무가급) ① 규정 제16조 제2항 직무가급의 세부운영기준은 '별표8'에 의한다.

<개정 2022.8.30, 2023.12.28>

- ② 직능가급은 정액으로 운영하며 '별표8'의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1일 신분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자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8.30, 2023.12.28>
- ③ 직무환경가급은 정률로 운영하며, 매월 1일 근무지를 기준으로 '별표8'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8.30>
- ④ 선임가급, 공사감독가급, 현장정비책임가급은 '별표8'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2.8.30>
- 1. 선임가급은 법령에 의하며, 면허, 자격이 면허 관련부서에 의해 관계기관 등에 선임, 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선임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2.8.30>
- 2. 공사감독가급은 공사감독원으로 임명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2.8.30>
- 3. 현장정비책임가급은 현장정비책임자로 임명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2.8.30>

제 4 장 성과급

제14조(성과급) ① 일반성과급의 세부운영기준은 '별표2'에 의하며, 인센티브성과급의 세부운영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되 입사 후 실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수습기간 포함)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2, 2003.5.9, 2003.12.14, 2009.12.30, 2013.12.31, 2016.10.27, 2020.11.4> ② 직원이 성과급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 2019.12.31>

제 5 장 수당

제15조(정률수당 계산시의 기준보수) ① 규정 제19조 '별표5'에 의한 수당 중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수당은 보수계산기준일 현재의 직급과 호봉에 의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1999.3.12. 2022.8.30>

② 제1항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수당"이라 함은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약간근무수당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5.3.14, 2022.8.30>

제16조(가스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17조(기술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18조(특수지근무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19조(출납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20조(선임수당) (삭 제) <삭제 2022.8.30>

제21조(공사감독수당) (삭 제) <삭제 2022.8.30>

제22조(가족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23조(현장정비책임자수당) <삭제 2022.8.30.>

제24조(감사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25조(전산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26조(상여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27조(연차수당) ① 규정 제19조 '별표5'에 의한 연차수당은「취업규칙」제27에 의하여 부여되는 연차 휴가중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대상 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3.14, 2005.12.21, 2009,12,30, 2014.12.30, 2022.8.30>

- ② (삭 제) <개정 2005.3.14>
- ③ 제1항의 연차수당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입사일이 1일자인 경우에는 당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12.21>
- **제28조(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① 규정 제19조 '별표5'에 의한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30>
 - 1. 연장 또는 휴일 근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하되 연장근무 시에는 연장근무수당, 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책정된 근무형태별 한도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30>
 - 2. 연장 및 휴일근무는 통상근무를 합하여 1주간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15, 2005.3.14, 2019.6.10, 2022.08.30>
 - 3. (삭 제)<개정 2005.3.14>
 - ② 제1항의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적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사장이 그 지급 한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 ③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19.12.31, 2022.8.30>
- 제29조(야간근무수당) 규정 제19조 '별표5'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은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8.30>

제30조(방사선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제31조(교대근무수당) (삭 제) <개정 1999.3.12>

- 제32조(해외근무수당) ① 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지역별 해외근무수당 및 해외특수지근무수당은 해외사업 현장에 파견된 직원에 한하여 임지에 착임한 날로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지역의 경우 대미환산율을 적용한 달러화(미)로 지급한다. <신설 2006.12.26, 2013.12.31, 2019.6.10, 2019.12.31., 2022.8.30>
 - ② 제1항의 수당은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근로기준법」상의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개정 2014.12.30, 2022.8.30>

- ③ 해외근무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주재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 ④ '별표7'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해외근무수당은 재외 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12.31>
-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직급과 공무워의 계급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1. 공사 1급 : 공무원 3급 <신설 2019.12.31>

2. 공사 2급 : 공무원 4급 <신설 2019.12.31>

3. 공사 3급 : 공무원 5급 <신설 2019.12.31>

4. 공사 4급 이하 : 공무원 6급 <신설 2019.12.31>

제 6 장 퇴직금

제33조(근속기간의 계산) 규정 제21조의 근속기간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30>

- 1. 「취업규칙」제4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호, 제13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와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7.11.15, 2011.1.21, 2013.12.31, 2018.12.28, 2022.8.30>
- 2. 상근 별정직 직원이 전임직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본다, 다만,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본다. <개정 2011.1.21, 2019.12.31>
- 3. 근속기간 계산 시 1년 미만은 월할계산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개정 1999.3.12>
- 4.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3.5.9>
- **제34조(평균임금의 계산)** 규정 제22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3.12, 2022.8.30>
 - 1. 퇴직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기본연봉), 직무급(직무연봉), 직무가급,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총액을 3등분한 금액, 단, 직무급(직무연봉)의 당해 연도 직무평가 결과 직무 등급 확정일 이전 퇴직 시는 지급된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3.5.9, 2005.3.14, 2005.12.21, 2006.12.26, 2009.12.30, 2011.1.21, 2013.12.31, 2022.8.30>
 - 2. 연차수당: 제27조 제1항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퇴직 당시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눈 금액 <개정 2020.11.04, 2022.8.30>
 - 3. 성과급: 성과급(일반성과급, 내부평가급) 연간지급률과 퇴직일로부터 과거 1년간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공사지급률에 퇴직 당시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과급 해당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다. 단,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8, 2013.12.31, 2016.10.27, 2020.12.28, 2021.6.30., 2023.4.27>
 - 4. (삭 제) <개정 2009.12.30>

- 5. (삭 제) <개정 2006.12.26.. 2009.12.30. 삭제 2014.7.25>
- **제35조(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 퇴직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평균임금계산 시 퇴직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을 최종월로 한다. <개정 1999.3.12., 2003.5.9>
 - ② (삭 제) <개정 2003.12.14>
 - ③ 아래 각 호에 따른 월 보수의 감액 또는 부지급 되었을 때에는 감액 또는 부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개정 1999.3.12, 2022.8.30>
 - 1. 질병으로 인한 휴가, 결근 및 제33조의 제1호의 근속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에 의해 월 보수 감액 지급 시 <개정 2018.12.28. 2022.8.30>
 - 2. 「향토예비군법」, 「민방위법」 등 법령에 의해 1개월 이상의 동원에 따라 월 보수 감액 지급 시
 - ④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출장 및 교육, 대외파견으로 월 보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본사 통상근무자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9.3.12>
 - ⑤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유계결근, 무계결근, 무보직 및 제7조와 제7조의 2에 의한 보수감액 대상자가 퇴직 시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감액된 보수기준으로 제3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단, 무보직 기간 중 퇴직하는 자(비위행위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승인한 직원의 평균임금은 무보직 직전 3개월간의 급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 및 성과급은 무보직 직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1999.3.12, 2011.1.21, 2014.7.25, 2018.12.28, 2022.8.30>
 - ⑥ 제4조 이외의 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 중 퇴직 시는 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제34조에 따라 계산하되 직무급은 제외하고 성과급은 당해 연도의 최저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개정 1999.3.12, 2018.12.28, 2022.8.30>
 - ⑦ 제3항 내지 제6항 이외의 사유로 급여의 정상지급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지급된 1개월 또는 2개월의 지급기준으로 세칙 제34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9.3.12, 2022.8.30>
 - ⑧ (삭 제) <개정 1999.03.12, 삭제 2005.12.31>
 - ⑨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가 취업규칙 제28조에 의한 특별휴가 시 휴가기간에 관계없이 본사 해당 직급의 통상근무자의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9.3.12., 2011.1.21>
 - ⑩ 회사의 경영상태 등 회사시책에 따른 일시적인 월 보수의 감액 지급 시에는 보수 감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① 제1항 내지 제9항의 평균임금 산정액이 퇴직 당시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무보직, 정직 또는 휴직 중 퇴직한 자의 통상임금은 동 사유 발생 직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9.3.12, 2022.8.30>

제36조(퇴직금의 지급 제한) <삭제 2006.12.26>

- 제37조(퇴직금의 감액) ①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파면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2분의1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4.8.18>
 - ②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나 형사재판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의1의 지급을 유보한다. <신설 2014.8.18>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지급하여 할 금액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규정에 따른 법정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법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1.12.24>
- 제38조(퇴직금의 청구) 퇴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3.5.9. 2006.12.26. 2011.1.21>

- 제39조(수령권자) ①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 시에는 그 본인, 1년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사망 시에는 상속자(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3.5.9>
 - ② 제1항의 상속자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3.5.9, 2011.1.21>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이 세칙 시행전에 지급된 보수는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보며 정산한다.
 - 2. 이 세칙 시행당시 입사자(1993년 11월 1일 이전)에 한하여 별표3의4 신규채용자의 지급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납수당, 선임수당, 공사감독수당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가족수당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가스수당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가족수당 및 선임수당은 1997년 8월 1일부터, 평균임금

계산기준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28조의 평균임금 계산시 1998년도 개인 및 단체평가결과 도출일 이전 퇴직자는 직능급 및 성과급 적용에 있어 중위수의 직능급 및 성과급을 적용한다.
 - 2. 제27조 제3항의 근속기간 계산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하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종전규정(1년 이상 근속한 자의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계산한다.)을 적용한다.
 - 3. 1999년도 직능급 지급시 지급률은 중위수를 적용한다.
 - 4. 1999년도 차등성과급 지급시 개인의 업적평가결과는 1999년도 상반기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7조 제3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한 종전 규정 (1년이상 근속한 자의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계산한다.) 적용은 1999년 8월 31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단, 반장수당은 2000년 11월 1일부터, 공사감독수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2. 전 한국가스엔지니어링(주) 직원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한국가스엔지니어링(주)의 입사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단, 포상자에 대한 성과급 가산 지급 중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산전·후 휴가자 60일 이후 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2003년 5월 9일부터 적용한다.
 - 2. 공사감독수당의 지급기준은 200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세칙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14조의 4(성과급), 제24조(연차수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원으로 환직한 직원의 근속기간(제27조 제2호)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3조의 의원면직자, 제6조의 인사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무보직자, 제10조의 3의 직무 대리의 보수, 제20조의 반장수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26조의 4의 제5항 별표7은 규정시행일 이후의 신규 해외사업과 기 수행중인 해외사업의 연장계약의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3년 6월 10일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규정 시행에 의하여 폐지된 본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복원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세칙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일로부터 성과연봉제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5조 1항의 2호 및 [별표4]의 현장대리인, 반장수당 지급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7조2의 부서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보수 감액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4】의 공사감독수당 지급액은 2020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8조 3항의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조 제2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일 기준 휴직 중인 직원은 적용일 이전 휴직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년 8월 30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직무급) 및 제13조(직무가급)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년 12월 29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년 4월 27일>

이 세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년 12월 28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능급 운영기준 <삭 제>

【별표 2】<개정 2013.12.31., 2016.10.27, 2020.11.04>

일반성과급 운영기준

- 1. 성과급 지급률 <삭제 2016.10.27>
- 2. 일반성과급 운영기준
 - 가. 지급일
 -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보수지급일
 - 설, 추석으로부터 3일전
 - ※ 매월 지급률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나. 계산기간
 - 지급월의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설, 추석 : 해당 명절 당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설 명절이 1월일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지급대상
 - 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자
 - 퇴직, 휴직 중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공상휴직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라. 지급률은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별표 3】퇴직금 계산서 <삭제 2011.1.21>

【별표 4】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삭 제>
<개정 2011.12.28, 2014.12.30, 2019.6.10, 2019.12.31, 2020.8.3, 2022.5.13, 삭제 2022.8.30>

【별표 5】 반장수당 지급기준 <삭 제>

【별표 6】 평균임금 산출내역 <삭 제>

지역별 해외근무수당

(단위 : US\$ 등/월)

지역	해당국가	단위	1급	2급	3급	4급 이하
"1"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베트남	US\$	2,983	2,621	2,420	2,221
"2"	인도네시아, 예맨, 태국,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파나마	US\$	3,079	2,695	2,484	2,273
"3"	이라크, U.A.E, 리비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도미니카, 멕시코	US\$	3,207	2,806	2,585	2,365
"4"	미얀마, 카타르, 자메이카	US\$	3,354	2,932	2,701	2,469
" 5"	중국(시안, 광저우, 선양, 청뚜, 칭다오)	위안	21,681	18,807	17,227	15,647
"6"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US\$	3,513	3,069	2,826	2,583
"7"	중국(상하이, 기타 전지역)	위안	22,638	19,640	17,988	16,338
"8"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사할린)	US\$	3,630	3,170	2,917	2,665
" 9"	영국	파운드	2,586	2,293	2,132	1,971
"10"	싱가포르	싱가포르\$	4,897	4,249	3,891	3,535
"11"	러시아(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	US\$	4,044	3,529	3,246	2,963
"12"	캐나다	캐나다\$	4,050	3,523	3,215	2,935
"13"	호주	호주\$	4,432	3,857	3,521	3,215
"14"	이태리, 네델란드	유로	3,123	2,717	2,479	2,264
"15"	홍콩	US\$	3,758	3,280	3,019	2,757
"16"	미국(휴스턴 등)	US\$	3,207	2,804	2,583	2,360
"17"	미국(뉴욕 등)	US\$	3,359	2,935	2,702	2,470

【별표 8】<신설 2022.8.30, 개정 2022.12.29., 개정 2023.12.28.>

직무가급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직능가급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 3급 이하 일반직 직원
직무환경가급	월 기본급 × 2.8%	○ 기지지사 근무 직원(제주LNG지사 포함) ^{주1)}
선임가급 ^{주2)}	안전·보건관리자 : 월 200,000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
	허가선임신고자 : 월 40,000원	○ 법령에 의하여 면허, 자격이 면허관련부서에 의해 관계기관에 선임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 신고된 자(1인 1종에 한함)
	현장대리인 : 월 80,000원	○ 계약공기 2개월 이상의 공사·용역에 현장대리인 및 시공관리자(공사금액 5억 이상)로 선임된 자 (선임기간 중복 시 1건만 지급)
	안전점검원 : 월 50,000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
공사감독기급 ^{주2)}	월 60,000원	○ 계약공기 1개월 이상의 단위공사에 공사감독원 으로 임명된 자(현장대리인 선임 또는 임명기간 중복 시 1건만 지급)
현장정비 책임가급 ^{주2)}	월 100,000원	○「현장정비책임자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

- 주1) 업무지원팀 및 안전공무팀 직원 제외
- 주2) 월 지급한도 : 선임가급, 공사감독가급, 현장정비책임가급은 전보 등으로 인한 동일 특수업무의 월중 선임 및 해임 사유 중복 발생 시 1건만 지급